

第99回國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78年 2月25日(土)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

審査된案件

- 1. 會期決定의件 1面
- 2. 議事日程協議의件 1面
- 3. 1978年度國會所管豫備金支出同意의件(第1次) 1面
- 4. 國會事務處職制中改正案 2面
- 5. 國會圖書館職制中改正案 2面

(9時10分 開議)

○委員長 金龍泰 成員이 되었읍니다.

第1次 國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行政官 禹在忠 報告를 올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龍泰 議案審議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無所屬에서 運營委員으로 되신 梁正圭委員 朴貴洙委員 두분을 紹介해 드리겠읍니다.

○梁正圭委員 잘 부탁드립니다.

○朴貴洙委員 잘 부탁드립니다.

- 1. 會期決定의件
- 2. 議事日程協議의件

(9時12分)

○委員長 金龍泰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第99回 臨時國會 會期決定과 第2項 議事日程協議의件을 上程하겠읍니다.

委員 여러분앞에 油印物을 配布해 드렸읍니다.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期 및 議事日程을 配布해 드린 油印物 그대로 決定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없으시면 第99回 臨時國會 會期和 日程을 採擇한 것을 宣布합니다.

- 3. 1978年度國會所管豫備金支出同意의件 (第1次)

(9時15分)

○委員長 金龍泰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78

年度國會所管豫備金支出同意의件을 上程합니다. 事務總長께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總長 李鎬振 1978年度 第1次 國會所管豫備金支出同意要請에 대하여 說明을 드리겠읍니다.

1978年度 國會所管豫備費 豫想額은 6億원이며 第1次 支出同意要請額은 5億7,994萬6,000원이 되겠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議長 副議長情報費 12個月分 6,300萬원

둘째 各 常任委員長情報費 12個月分 1億3,440萬원

세째 各 交涉團體 및 無所屬情報費 12個月分 1億2,780萬원

네째 國會運營改善情報費 1,170萬원

다섯째 國會公務員職務手當 및 諸手當所要額이 1億3,488萬원으로서 事務處가 924人에 1億821萬6,000원이며 圖書館이 200人으로 2,666萬4,000원입니다.

여섯째 鄉土豫備軍運營經費가 428萬6,000원으로서 事務處中隊 338萬6,000원 圖書館小隊 90萬원입니다.

일곱째 圖書館運營情報費 300萬원

여덟째 國會記錄映畫攝影經費 500萬원

아홉째 一線將兵慰問經費 1,400萬원

열번째 國會警備隊補助費 1,488萬원이며

끝으로 1978年度 秋夕經費 및 年末經費가 6,700萬원입니다.

이상이므로 1978年度 第1次 國會所管豫備

金支出同意要請에 대하여 說明드리오니 審議하셔서 同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泰 방금 事務總長께서 豫備金支出同意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었읍니다라는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고 이 支出同意案에 대해서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없으시면 原案대로 同意한 것을 宣布합니다.

4. 國會事務處職制中改正案

5. 國會圖書館職制中改正案

(9時16分)

○委員長 金龍泰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國會事務處職制中改正案과 議事日程 第5項 國會圖書館職制中改正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事務總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總長 李鎬賑 國會事務處職制中改正案에 대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現行 事務處職制는 지난 1975年12月17日 第94回 國會 第5次 國會運營委員會에서 改正하여 施行中에 있습니다라는 涉外局業務中 翻譯 通譯 및 資料分析業務에 從事하는 要員과 새로 建立된 議員會館 및 議事堂의 施設管理에 필요한 人員을 確保하기 위하여 이 職制改正案을 提案하게 되었습니다.

改正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議員會館管理를 위하여 議員會館管理擔當官을 新設하고 機械 電氣 通信施設의 技術의 인 統合 維持管理를 위하여 機電擔當官을 技術職으로 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涉外業務의 能率化를 위하여 涉外局에 別定職公務員으로 資料分析官 通譯官 儀典官 翻譯官 1人을 각각 두도록 하였고

셋째 研修院運營의 效率化를 위하여 研修院 職級을 一部 調整하여 研修院長 밑에 둔 1級 또는 2級の 教授를 2級甲類의 教授와 研修官으로 調整하였으며

네째 庶政刷新과 行政業務改善을 위하여 監查業務를 分擔 處理할 수 있도록 監查官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涉外要員의 一部 및 議員會館管理 要員의 增員 監查官新設 등으로 別定職과 一般職에서 12人이 增員되었으며 議員會館 守衛 12

人과 現在 雜給職으로 있는 國會構內交換室 電話修理員 2人外에 常任委員會使喚 13人等を 定員化하고 全體定員을 一部 調整하여 現定員보다 30人이 增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職制案은 昨年 定期國會때 提案한 것인데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읍니다라는 이번에는 當面한 問題를 調整하는 範圍안에서 議決해 주시면 餘他的 것은 事務處에 設置되어 있는 機構研究委員會에서 全體職制와 같이 研究 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泰 다음은 圖書館長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長 金鍾浩 國會圖書館職制中改正案에 대한 說明書を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圖書館職制中改正案에 대한 說明을 드리자면 改正理由와 骨子を 要約하여 말씀드리면 圖書館 各課別 分掌業務와 各擔當官의 分擔事務를 再調整하여 效率적이고 能率의으로 圖書館奉仕業務를 遂行코자 現在 圖書館職員中에서 事務處로 派遣中인 機械員 3人과 守衛 4人 廳夫 4人 計 11人을 事務處 定員으로 하고 事務處에서 圖書館에 派遣中인 別定職 攝影員 2人을 圖書館定員으로 現實化하고 圖書館의 現定員 範圍內에서 一部 職級을 調整하여 날로 격증하는 立法調查局의 參考質疑 業務量에 適合하도록 一部 擔當官의 分擔事務를 再調整하고 自然環境의 保護 國土資源의 效率的 開發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른 產業社會의 機能에 對處하기 위하여 國土資源課 1個課를 新設하여 國土交遞擔當官 資源動力擔當官 自然環境擔當官을 두고 北韓社會의 異質化와 그들의 南侵野慾에 對處하기 위하여 體系的으로 北韓을 研究할 수 있도록 海外資料局에 2級乙類의 北韓政治資料擔當官을 두고 現 中華課를 中國課로 名稱을 바꾸는 것 등을 內容으로 하는 것입니다.

定員調整에 있어서는 現 圖書館公務員中 機能職 3人 雇傭職 10人을 減하여 一般職 10人 2級乙 2人 3級甲 3人 3級乙 3人 4級乙 2人과 別定職 3人 攝影員 4級 2人 漢書整理員 4級 1人을 增員하였습니다.

豫算은 78年度 人件費內에서 自體調整하여 充當코자 합니다.

이 案을 審査하시고 通過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泰 다음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劉龍珪 먼저 國會事務處職制改正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올리겠습니다.

改正案의 主要內容은 이미 事務總長께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省略을 하고 3「페이지」의 檢討結果와 意見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本 職制改正案은 議員會館이 新築됨에 따라 會館의 管理業務를 擔當할 公務員을 두어 機能遂行의 效率性을 期하고자 하는 것과 涉外業務의 能率化를 위해서 雜給職을 別定職으로 하여 定員을 調整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職級과 職種의 一部를 調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事務處에서는 지난 2月1日 機構研究委員會를 두어 組織原理에 符合되는 合理的인 機構編成을 위해서 現行機構를 檢討하고 있으므로 本 改正案은 現實적으로 不可避한 事項과 不合理한 事項만을 改正하고 그외의 事項은 機構研究委員會의 全般的인 研究結果가 있는 후에 處理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檢討結果에 따른 意見으로서는 本 改正案을 다음과 같이 再調整하는 것이 妥當한 것으로 判斷됩니다.

첫째 定員調整입니다.

議員會館 新築에 따라 그 管理를 위하여 必要로 하는 人員 20人和 涉外業務의 能率化를 위하여 必要로 하는 人員 4人 計 24人을 增員하되 反面에 別定職과 雜給職으로 代替할 수 있는 6人和 事務處에서 圖書館으로 派遣하고 있는 撮影員 1人 計 7人을 減縮함으로써 17人을 增員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定員表에 職列을 明示하는 것이 妥當하며 速記 警衛는 補職으로 하고 그 職列은 調整하여야 할 것입니다.

增員內容과 減縮內容은 表와 같으며 省略하겠습니다.

둘째로 職級調整입니다.

研修院의 1級 教授 1人을 2甲으로 調整하며 다음에 職種調整입니다.

別定職인 非常計劃員을 一般職으로 調整하고 技能職을 雇傭職으로 轉換하여 經過措置로 職

列을 助務員으로 한 現在員 45人을 定員上 技能職 助務員으로 調整하며 技能職으로 있던 運轉員을 雇傭職으로 固定化시키고 있는 現在員 9人을 定員上 技能職 助務員으로 調整하는 것이 妥當한 것입니다.

參考로 이상과 같이 調整한 事項에 대해서 本 改正案을 修正하여 草案으로 作成하고 意見으로서 別途로 添附하였습니다.

事務處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圖書館職制改正案의 檢討報告를 올리겠습니다.

역시 改正案의 主要內容은 圖書館長께서 說明을 올렸기 때문에 省略을 하고 2「페이지」의 檢討結果 및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職制改正案은 機構를 再編成하여 그 機能과 事業의 育成 發展策을 圖謀한 것으로서 課를 新設하고 擔當官의 增員 및 配置를 調整하고 不合理한 名稱의 變更과 定員을 調整한 것입니다. 그러나 組織의 分業原理와 調整原理를 適用하는데 있어서 符合되지 않은 點이 있는 바 첫째 立法調查局에 北韓問題의 重要性에 비추어 現在 弘報業務가 推進中에 있으므로 專擔職員의 配置와 그 외에 現實적으로 不合理한 點을 調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檢討結果에 따른 意見으로서는 本 改正案을 다음과 같이 再調整하는 것이 妥當한 것으로 判斷됩니다.

첫째 立法調查局에 있어서는 北韓課를 新設하여 北韓政治 經濟 社會擔當官을 두며 다음에 文公社會課에 自然環境擔當官을 新設하고 다음에 擔當官 配置를 調整하되 國會運營擔當官을 法司擔當官앞에 두며 國土交遞擔當官을 財政經濟課에 配置하는 것입니다.

둘째 海外資料局에 있어서 立法調查局에 北韓課를 둠에 따라서 北韓擔當官을 廢止하고 歐美課의 美洲擔當官을 北美 南美로 分離하고 中東 「아프리카」擔當官을 「아프리카」擔當官으로 하며 亞洲課에 中東擔當官을 配置하는 것입니다.

셋째 名稱變更입니다. 海外資料局에 中華로 되어 있는 課 및 擔當官의 名稱을 自由中國과 中共問題를 다루고 있으므로 中國으로 하며 農林水產擔當官을 農水產擔當官으로 變更하는 것입니다.

네째 定員調整에 있어서 北韓課를 新設함에 따라 그 機能을 遂行할 人員과 弘報資料業務를 擔當할 人員 南美擔當官 漢書整理官 그리고 事務處에서 派遣되어 있는 攝影員 2人 計 18人을 增員하고 그 反面에 事務處로 派遣되어 있는 11人和 雇傭職 1人을 減縮함으로써 6人만을 增員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定員表에 職列을 明示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增員內譯과 減縮內譯은 表와 같으며 이것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職種調整입니다.

첫째 別定職인 非常計劃員을 一般職으로 調整하고 雇傭職인 漢書整理員 1人을 別定職(4甲)으로 하며 다음에 技能職을 雇傭職으로 轉換하여 經過措置로 職列을 助務員으로 한 現在員 8人을 定員上 技能職 助務員으로 調整하는 것이 妥當할 것입니다.

參考로 以上과 같이 調整한 事項에 對해서 本 改正案을 修正하여 草案을 作成하고 意見으로서 別途로 添附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泰 이제 國會事務處와 圖書館의 職制改正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들었고 또한 專門委員의 檢討結果를 들었습니다. 專門委員의 檢討結果의 의견을 當委員會 代案으로 處理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없으시면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오늘은 議事日程이 끝났으므로 散會합니다.
(9時29分 散會)

○出席委員

金龍泰	李道先	李永根
李鍾植	鄭在虎	咸明洙
姜秉奎	吳俊碩	李海元
金相鎭	宋元英	李震淵
黃明秀	朴貴洙	梁正圭

○其他參席者

國會事務總長	李鎬	賑祥
國會事務次長	吉基	祥浩
國會圖書館長	金鍾浩	

【報告事項】

○廻付된議案

1978年度國會所管豫備金支出同意의件
1977年12月29日字 廻付된
議事日程協議의件
2月23日字 廻付된

○常任委員變更

委員會名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國會運營	金光洙	朴貴洙	無所屬
"	金潤河	梁正圭	"

1月7日字

(參照)

議事日程(案)

月 日	付 議 案 件	備 考
2月27日(月)	1. 常任委員長(農水產·建設)補闕選舉	1. 議員宣誓 2. 第99回國會(臨時會)會期決定 2月25日~3月8日(12日間)
2月28日(火)	1. 國政에 관한보고	1. 國務委員就任人事
3月2日(木)~ 3月3日(金)	1. 國政에 관한보고(質疑)	1. 休會決議 3月4日~3月7日(4日間)
3月4日(土)~ 3月7日(火)	休會(4日間)	1. 常任委員會活動
3月8日(水)	1.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選出의件 2. 一般案件과 處理	

(參照)

國會事務處職制改正案檢討報告書

國會運營委員會 專門委員

目次

1. 改正案의 主要內容
2. 檢討結果 및 意見

事務處職制改正案檢討報告

一. 改正案의 主要內容

1. 定員調整

① 增員

	職 級	人 員	備 考
監查官	2 乙	1	次長 밑에 들
	3 乙	1	
	4 甲	1	
管理官	3 甲	2	議員會館 및 機電擔當官
	4 乙	1	行政要員
涉外局	2 乙	3	資料分析官 通譯官(別定職)
	3 甲	2	儀典官 翻譯官(別定職)
研修院	4 甲	1	行政要員
總務課	3 乙	1	年金取扱要員
	4 甲	1	
技能職		2	電話修理員
防護員		12	議員會館勤務
使喚		13	常任委雜給使喚現實化
計		41	

② 減縮

涉外局	3 乙	1	儀典課
研修院	2 乙	1	監查官으로 充員
廳 夫		9	清掃員 雜給으로 代替
計		11	

③ 純增

增員 41人—減縮 11人=30人

2. 職級調整

① 議長秘書官: 2 乙 1人을 2 甲으로 調整
3 甲 1人을 2 乙로 調整

② 研修院: 1 級 1人을 2 甲으로 調整

3. 職種調整

別定職(非常計劃員)을 一般職으로 調整

4. 職名變更

毛筆士(別定職 3 乙)을 書寫官으로 調整

二. 檢討結果 및 意見

本 職制改正案은 議員會館이 新築됨에 따라 會館의 管理業務를 擔當한 公務員을 두어 機能遂行의 效率性을 期하고자 하는 것과 涉外業務의 能率化를 爲해서 雜給職을 別定職으로 하여 定員을 調整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으며 그 外에 職級과 職種의 一部를 調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現在 事務處에서는 지난 2月1日 機構研究委員會를 두어 組織原理에 符合되는 合理的인 機構編成을 爲해서 現實機構를 檢討하고 있으므로 本改正案은 現實적으로 不可避한 事項과 不合理한 事項만을 改正하고 其外의 事項은 機構研究委員會의 全般的인 研究結果가 있는 後에 處理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以上과 같은 檢討結果에 따른 意見으로서는 本改正案을 다음과 같이 再調整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判斷됩니다.

1. 定員調整

議員會館 新築에 따라 그 管理를 위하여 必要로 하는 人員 20人和 涉外業務의 能率化를 위하여 必要로 하는 人員 4人 計 24人을 增員하되 反面에 別定職과 雜給職으로 代替할 수 있는 6人和 事務處에서 圖書館으로 派遣하고 있는 撮影員 1人 計 7人을 減縮

함으로써 17人を 增員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定員表에 職列을 明示하는 것이 妥當하며 速記 警衛는 補職으로 하고 그 職列은 調整하여야 할 것입니다.

① 增員內譯

區分 所屬	職種	職級	人員	備 考
管 理 局	一般職	3甲	2	議員會館擔當官 施設擔當官
	別定職	3乙	1	造景園藝官
	技能職		5	機械員 3人(圖書館에서 轉入) 電話修理員 2人
	雇傭職		12	防護員(圖書館에서 4人 轉入)
涉 外 局	別定職	2乙	2	通譯官
		3甲	2	儀典官 翻譯官
計			24	

② 減縮內譯

議事局	別定職	4甲	1	撮影員(圖書館으로 轉出)
管理局	雜務職		5	雜給職으로 代替
涉外局	一般職	3乙	1	別定職으로 代替

※ 圖書館雜務職 4人は 事務處定員으로 代替

2. 職級調整

研修院의 1級 教授 1人を 2甲으로 調整하며

3. 職種調整

① 別定職인 非常計劃員을 一般職으로 調整하고

② 技能職을 雇傭職으로 轉換하여 經過措置로 職列을 助務員으로 한 現在員 45人を 定員上 技能職 助務員으로 調整하며

③ 技能職으로 있던 運轉員을 雇傭職으로 固定化시키고 있는 現在員 9人を 定員上 技能職 助務員으로 調整하는 것이 妥當할 것입니다.

參考로 以上과 같이 調整한 事項에 대해서 本 改正案을 修正하여 草案으로 作成하고 意見

으로서 別途로 添附하였습니다.

國會事務處職制中改正案修正草案(意見)

第3條中 別表를 別紙와 같이 한다.

第7條 第2項中 “第3號 내지 第5號”를 각각 “第4號내지 第6號”로 하고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議員會館管理 및 維持補修

第7條中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第4項 및 第5項”으로 하고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施設管理課長 밑에 議員會館의 管理와 設備 施設의 維持管理에 관한 業務를 각각 分擔하기 위하여 議員會館擔當官과 施設擔當官을 두며 議員會館擔當官은 書記官으로 施設擔當官은 機械技正, 電氣技正, 建築技正으로 補한다.

第8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儀典課長 밑에 儀典에 관한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儀典擔當官과 儀典官을 두며 儀典擔當官은 書記官으로 儀典官은 別定職公務員(3級甲類相當)으로 補한다.

第8條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涉外課長 밑에 通譯業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通譯官을 두며 議員의 海外活動을 地域別로 分擔하기 위하여 美亞擔當官 歐阿擔當官 및 南美擔當官을 두며 通譯官은 別定職公務員(2級乙類相當)으로 기타 擔當官은 書記官으로 補한다.

第8條 第7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國際課長 밑에 國際會議에 관한 業務와 通譯 및 翻譯業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通譯官과 國際會議擔當官 및 翻譯官을 두며 通譯官은 別定職公務員(2級乙類 相當)으로 國際會議擔當官은 書記官으로 翻譯官은 別定職公務員(3級甲類相當)으로 補한다.

第9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研修院에 院長 1人を 두며 管理官 또는 理事官으로 補한다.

同條 第③項中 “1級 또는”을 削除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規則은 197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規則 施行當時의 非常計劃員은 이 規則 施行日로부터 1年의 期限內에 限하여 別定職公務員으로 在職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別表의 國會事務處公務員定員中 一般職 行政主事 2人과 行政書記 2人은 充員된 것으로 본다.

(別表)

國會事務處公務員定員表

事務總長	1人
事務次長	1人
秘書室長	1人
專門委員	38人
秘書官(1級相當)	3人
秘書官(2級甲類相當)	3人
非常計劃官(2級甲類相當)	1人
秘書官(2級乙類相當)	3人
通譯官(2級乙類相當)	2人
秘書官(3級甲類相當)	5人
國會議員秘書官(3級甲類相當)	219人
儀典官(3級甲類相當)	1人
翻譯官(3級甲類相當)	1人
秘書官(3級乙類相當)	2人
毛筆士(3級乙類相當)	2人
造景園藝官(3級乙類相當)	1人
秘書(4級甲類相當)	1人
攝影員(4級甲類相當)	1人
攝影員(4級乙類相當)	2人
表決士(4級乙類相當)	9人
別定職計	297人
管理官 또는 理事官	4人
理事官	2人
副理事官	15人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	10人
副理事官 施設工業副技監 또는 書記官 建築 機械 電氣技正	1人
機械 電氣 建築技正	1人
書記官	11人
法制官(3甲) 또는 書記官	14人
行政事務官	35人
法制官(3乙)	14人
建築技佐	1人
機械技佐	1人
電氣 또는 通信技佐	2人
行政主事	150人
建築技士	2人
土木技士	1人
機械技士	2人
電氣技士	3人

通信技士	3人
行政主事補	47人
建築技士補	2人
土木技士補	1人
機械技士補	1人
電氣技士補	2人
通信技士補	2人
行政書記	35人
5級以上 一般職計	362人
6等級	
機械員	2人
電氣員	1人
電話修理員	1人
助務員	1人
7等級	
機械員	1人
助務員	9人
8等級	
機械員	2人
電氣員	3人
電話修理員	4人
助務員	27人
9等級	
助務員	17人
技能職計	68人
雇傭職計	214人
合計	941人

(參照)

國會圖書館職制改正案檢討報告書

國會運營委員會 專門委員

一. 改正案의 主要內容

1. 課 增設

立法調查局에 國土資源課 新設

2. 擔當官 增員

① 海外資料局長 밑에 北韓政治資料擔當官을 둠

② 立法調查局 課 新設로 資源動力擔當官 自然環境擔當官을 둠

③ 海外資料局 歐美課에 南美擔當官을 둠

3. 擔當官 配置調整

① 法制政治課에 있던 國會運營擔當官을 文公社會課에 配置함

② 文公社會課에 있던 國土交遞擔當官을 國土資源課에 配置함

③ 歐美課에 있던 中東「아프리카」擔當官을 亞洲課에 配置함

4. 名稱變更

- ① 中華課를 中國課로 함
- ② 農林水產擔當官을 農水產擔當官으로 함
- ③ 美洲資料擔當官을 北美資料擔當官으로 함

5. 定員調整

- ① 增員
2乙 2人 3甲 3人 3乙 3人
4甲 2人 別定職 3人 計 13人
- ② 減縮
技能職 3人 守衛 5人 廳夫 4人
漢書整理員 1人 計 13人

二 檢討結果 및 意見

本 職制改正案은 機構를 再編成하여 그 技能과 事業의 育成 發展策을 圖謀한 것으로서 課를 新設하고 擔當官의 增員 및 配置를 調整하고 不合理한 名稱의 變更과 定員을 調整한 것입니다. 그러나 組織의 分業原理와 調整原理를 適用하는데 있어서 符合되지 않은 點이 있는 바

- 1. 立法調查局에 北韓問題의 重要性에 비추어 오히려 北韓課를 新設하는 것이 妥當하며
- 2. 擔當官의 增員과 配置에 있어서 그 機能에 符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現在 弘報業務가 推進中에 있으므로 專擔職員의 配置와 그 外에 現實적으로 不合理한 點을 調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檢討結果에 따른 意見으로서는 本 改正案을 다음과 같이 再調整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判斷됩니다.

① 立法調查局

- 가) 北韓課를 新設하여 北韓政治 經濟 社會擔當官을 두며
- 나) 文公社會課에 自然環境擔當官을 新設하고
- 다) 擔當官 配置를 調整하되 國會運營擔當官을 法司擔當官앞에 두며 國土交遞擔當官을 財政經濟課에 配置하는 것입니다.

② 海外資料局

- 가) 北韓擔當官을 廢止하고
- 나) 歐美課의 美洲擔當官을 北美 南美白分離하고 中東「아프리카」擔當官을 「아프리카」擔當官으로 하며
- 다) 亞洲課에 中東擔當官을 配置하는 것입니다.

③ 名稱變更

海外資料局에 中華로 되어 있는 課 및 擔當官의 名稱을 自由中國과 中共問題를 다루고 있으므로 中國으로 하며 農林水產擔當官을 農水產擔當官으로 變更하는 것입니다.

④ 定員調整

北韓課를 新設함에 따라 그 機能을 遂行할 人員과 弘報資料業務를 擔當할 人員 南美擔當官 漢書整理官 그리고 事務處에서 派遣되어 있는 攝影員 2人 計 18人을 增員하고 그 反面에 事務處로 派遣되어 있는 11人和 雇傭職 1人을 減縮함으로써 6人을 增員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定員表에 職列을 明示하여야 妥當할 것입니다.

가) 增員內譯

區分 所屬	職 種	職 級	人 員	備 考
立 法 調 查 局	一般職	2乙	1	北韓課新設에 依함
		3甲	4	
		3乙	4	
		4甲	1	
海 外 資 料 局	一般職	3甲	1	南美擔當官
		3乙	1	
		4甲	1	
司 書 局	別定職	3乙	1	漢書整理官 攝影員
		4甲	1	
		4乙	1	
總 務 課	別定職	3甲	1	弘報資料官 攝影士
		3乙	1	
計			18人	

나) 減縮內譯

總 務 課	技能職	3	機械員(事務處定員으로)
	雇傭職	9	防護員 5人 (4人은 事務處定員으로) 雜務員 4人 (事務處定員으로)
計		12人	

⑤ 職種調整

가) 別定職인 非常計劃員을 一般職으로 調整하고

나) 雇傭職인 漢書整理員 1人을 別定職(4甲)으로 하며

다) 技能職을 雇傭職으로 轉換하여 經過措置로 職列을 助務員으로 한 現在員 8人을 定員上 技能職 助務員으로 調整하는 것이 妥當한 것입니다.

參考로 이상과 같이 調整한 事項에 대해서 本 改正案을 修正하여 草案을 作成하고 意見으로서 別途로 添附하였읍니다.

圖書館職制中改正案에 대한 修正草案(意見) 第3條 第①項의 別表를 “別紙”와 같이 한다. 第5條 第②項의 第1號를 “公務員 海外駐在”로 하고 第1號 乃至 7號를 第2號 乃至 第8號로 하고 第9號를 “管理 및 檢收”로 하고 第10號를 “弘報資料”로 하고 第12號를 第11號로 한다.

第③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總務課長 밑에 海外駐在官 企劃發刊擔當官 및 弘報資料官을 두며 海外駐在官은 副理事官으로 企劃發刊擔當官은 書記官으로 弘報資料官은 別定職公務員(3級甲類 相當)으로 補한다.”

第6條 第①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立法調查局에 法制政治課 財政經濟課 文公社會課 및 北韓課를 둔다.”

第③項의 “第5號”를 “第1號”로 하고 “第1號 乃至 第4號”를 “第2號 乃至 第5號”로 한다.

第④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法制政治課長 밑에 國會運營擔當官 法制司法擔當官 外務擔當官 國防擔當官 및 內務擔當官을 두며 擔當官은 書記官으로 補한다.”

第⑤項中 第6號 第7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6 建設委員會 所管”
- “7 交通遞信委員會 所管”
- 第⑥項中 “農林水產擔當官”을 “農水產擔當官”으로 하며 “商工擔當官”다음에 “國土交遞擔當官”을 插入한다.
- 第⑦項中 第3號의 “建設委員會所管”을 “自然

環境에 關한 事項”으로 하고 第4號를 削除한다.

第⑧項中 “國土交遞擔當官”을 “自然環境擔當官”으로 한다.

第⑨項 및 第⑩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⑨北韓課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分掌한다.

- 1. 北韓의 政治 法制 및 軍事에 關한 事項
- 2. 北韓의 經濟에 關한 事項
- 3. 北韓의 社會에 關한 事項

⑩前項의 事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北韓課長 밑에 北韓政治擔當官 北韓經濟擔當官 및 北韓社會擔當官을 두며 擔當官은 書記官으로 補한다.”

第8條 第①項中 “中華課”를 “中國課”로 한다. 第③項 第1號를 北美 南美地域資料로 하고 第4號中 “中東”을 削除한다.

第④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前項의 業務를 分擔하기 위하여 歐美課長 밑에 北美資料擔當官 南美擔當官 歐洲擔當官 및 「아프리카」擔當官을 두며 北美資料擔當官은 副理事官 또는 書記官으로 기타의 擔當官은 書記官으로 補한다.”

第⑤項 第2號의 “北韓地域資料”를 “中東地域資料”로 하며 第⑥項中 “北韓擔當官”을 “中東擔當官”으로 한다.

第⑦項 및 第⑧項中 “中華”를 “中國”으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改定 規則은 197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이 規則 施行當時의 非常計劃員은 이 規則 施行日로부터 1年의 期間內에 限하여 別定職 公務員으로 在職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別表의 國會圖書館公務員 定員中 一般職 行政主事 2人은 充員된 것으로 본다.

別 紙

國會圖書館定員表

圖 書 館 長	1人
非常計劃官(2級乙類相當)	1人
弘報資料官(3級甲類相當)	1人
秘 書 官(3級乙類相當)	1人
撮 影 士(3級乙類相當)	1人
漢書整理官(3級乙類相當)	1人

漢書整理士(4級甲類相當)	1人
撮影員(4級甲類相當)	1人
撮影員(4級乙類相當)	1人
別定職計	9人
管理官 正 理事官	3人
副理事官 正 書記官	19人
書記官	32人
行政事務官	30人
司書官	8人
行政主事	21人
司書	28人
機械技士	1人
行政書記	1人
司書書記	4人
一般職計	147人
6等級 電氣員	1人
8等級 助務員	6人
9等級 助務員	2人
技能職計	9人
雇備職計	43人
合計	208人